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2909
----------	------

2025년 9월 2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아이수루 의원(찬성자 14명)
- 나. 제안일 : 2025년 8월 8일
- 다. 회부일 : 2025년 8월 14일
- 라. 상정일 :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5년 9월 2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아이수루 의원)

가. 제안 이유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불법체류자 등으로 낙인찍히거나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블루 직종에만 취업이 제한되는 등 이주노동자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등이 존재하는 실정
-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임금 현장 구조에 국한되어 있는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등 근로조건 개선,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 인권 보호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5. 8. 20. ~ 8. 24.) 결과 : 의견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글로벌도시정책관) : 원안 가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조례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과(안 제7조제1항제11호) 인권 보호(안 제7조제1항제12호)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략) 11.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신설> 12.·13. (생략) ② ~ ⑥ (생략)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12.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13.·14. (현행 제12호 및 제13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 내용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제11호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및 인권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노동환경·복지에 대한 지원과 인권보호로 영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정책 목표와 접근 방식의 차별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노동환경 개선 등 사회적 이슈¹⁾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1) 2025년 8월 중기부, 산업재해 예방·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中企 의견 청취(서울경제, 2025.8.12.)
2025년 8월 포스코이앤씨 광명 현장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뉴스1, 2025.8.4.)
2025년 7월 전남 나주 벽돌공장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2025.7.25.)

- 다만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인 ‘외국인주민’은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정의(제2조제1호2))되어 있어, 서울시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나 거주지가 타 지역인 외국인 노동자,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외국인에게도 근로의 권리, 특히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³⁾’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와 노동환경에 관한 법령과 현행 조례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률·노무 상담,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의료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3)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2024헌마367, 2016. 3. 31. 헌법재판소 판례 참조)

- 외국인주민 포털 운영(서울외국인주민센터) * <https://global.seoul.go.kr/>
 -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주민 대상 통합정보 포털 운영, 정보접근성 제고
 - 다국어로 외국인주민 대상 상담, 교육·문화프로그램 안내, 취업정보 등 제공



서울외국인포털 메인화면

포털 내 외국인주민 대상 취업정보 제공

- 분야별 전문상담 운영(외국인주민센터 7개소)
 - 전문가(법률, 노무, 주거 등) 심화상담을 통한 법적·제도적 권익 보호
 - ▶ 센터별 이용수요에 따라 변호사·노무사 정기 방문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 등 진행
 -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 불안·우울 등 외국인노동자·주민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서울외국인주민센터)
 - 이주노동자 정서적 지원을 위한 ‘집단상담 힐링캠프’ 진행(은평외국인주민센터)
 -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주민 대상 의료지원
 - 외국인주민 대상 무료진료소 운영(내과·치과·한 의과 진료, 혈액검사, 의약품 처방) 및 민간기관 의료비 지원 등 연계(동부외국인주민센터)
 - 의료봉사단·민간기관과 연계한 정기 진료·검진 실시(강동·금천·성북·양천외국인주민센터)
 - 법률인권 강좌(동부외국인주민센터)
 - 기본법률 교육을 통한 이주민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 (월 1회 / 회당 100명)
 - 차별방지, 근로기준법, 산재예방, 법률 상식 등 기본법률 강좌 운영
 -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 지원(동부외국인주민센터)
 - 외국인노동자 재해 예방 지식습득, 소방관련 유관기관 협력 안전교육 실행
- ※ 기타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어교육·컴퓨터교실·한국사회 이해 교육 등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활동 등 운영 중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이수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09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08일
발 의 자: 아이수루 의원(1명)
찬 성 자: 김 경, 김기덕, 김영철,
김원태, 민병주, 박강산,
유만희, 유정희, 이민옥,
이소라,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의원(14
명)

1. 제안이유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불법체류자 등으로 낙인찍히거나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블루 직종에만 취업이 제한되는 등 이주노동자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등이 존재하는 실정
-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임금 현장 구조에 국한되어 있는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등 근로조건 개선,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 인권 보호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12.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외국 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0. (생 략)</p> <p><u>11.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12. · 13.</u> (생 략)</p> <p>② ~ ⑥ (생 략)</p>	<p>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u>1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u></p> <p><u>12.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u></p> <p><u>13. · 14.</u> (현행 제12호 및 제13호 와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7조(자원의 내용 및 범위) 제1항 제1호의 내용을 수정(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하고, 제12조를 신설(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한 것으로, 수정 및 신설 내용이 기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적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